

#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1. 유기식품 개념

중국에서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유기식품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용어는 유기산품(有机產品; Organic products)이다. 중국의 유기산품에 관한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인 'GB/T 19630-2011'은 유기농업과 유기산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유기농업은 “특정한 농업생산 원칙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유전자 변형을 거쳐 획득한 생물 또는 그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사료첨가제 등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법칙과 생태원리를 따르고 재배업과 축산업의 균형을 추구하며 일련의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사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농업생산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유기산품은 “유기산품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판매하여 인류의 소비와 동물의 식용을 위해 제공된 생산품”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준용하면 중국의 유기식

\* (hjchon@krei.re.kr +86-10-6344-29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전형진, 2012)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및 재정리하였음.

품은 “중국 국가표준 GB/T 19630-2011에 근거하여 유기산품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의 유기식품은 제조·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농산물 형태와 가공품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선농산물 형태의 유기농산물과 가공품 형태의 유기가공식품을 구분하고 각각 상이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4.1.1. 시행) 제정을 계기로 중국과 같이 신선농산물 형태와 가공품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sup>1)</sup>

중국의 유기식품과 한국의 유기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투입재나 식품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상의 차이는 없다.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된 전환기 유기식품 인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B/T 19630-2011은 “유기산품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생산자와 생산물이 유기인증 획득하기까지의 시간”을 전환기로 정의하고 있다.

전환기는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먼저 경종업(耕種業)의 경우 1년생 식물은 파종 이전 24개월, 다년생 사료작물은 유기사료 수확 이전 24개월, 사료작물 이외 기타 다년생 작물은 수확 이전 36개월이 최소 기간이다. 다음으로 축산업의 경우 육용우 12개월, 양 및 돼지 6개월, 젖소 6개월, 육용 가금류 10주, 산란용 가금류 6주 등이다.

중국에서 품질안전 관리 대상 농산물은 크게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녹색식품은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A급과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AA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AA급 녹색식품은 유기식품과 동일시되고 있다. 다만, 유기식품은 인증의 근거가 되는 표준이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AA급 녹색식품은 국제표준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자체적인 표준이 보다 강조된 국내표준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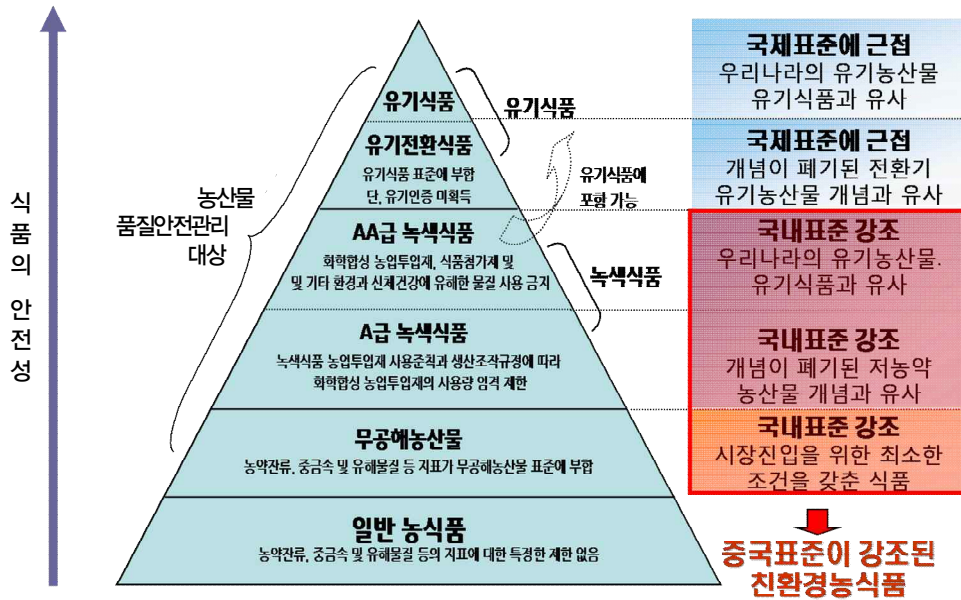
1) 이 법률은 유기식품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으로 정의함.

표 1 중국의 품질인증 대상 농산물 개념 비교

구분		개념 정의
유기식품 (유기식품)	유기	생산, 가공, 판매과정에서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국가표준 GB/T19630-2011)
	유기전환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이전 기간인 전환기(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국가표준 GB/T 19630-2011)
녹색식품	A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화학 합성의 비료,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 식품첨가제 및 기타 환경과 신체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유기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며,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A급 녹색식품 표시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녹색식품 농자재 사용준칙과 생산조작 규정의 요구에 의거하여 엄격히 화학합성 농자재의 사용량을 제한하며,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급 녹색식품 표시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무공해농산물		산지환경, 생산과정, 농산물 품질이 무공해농산물 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며, 인증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획득하고 무공해농산물 인증 표시의 사용을 허가받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단순가공한 식용 농축수산물(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제2조)

자료: 《無公害農產品管理辦法》; GB/T19630-2011(有機產品); NY/T 391-2000(綠色食品產地環境技術條件).

그림 1 농식품 안전성 기준에 의한 중국의 품질인증 대상 농산물 구분



## 2. 유기식품 인증제도 개요

중국의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아우르는 단일한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품질인증 대상인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별로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자의 인증제도는 제도 확립 시기, 목적, 법령 및 표준(standards), 인증기관 및 조직체계, 절차 및 비용, 표지 등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무공해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구매력을 갖춘 고소득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고부가가치의 실현 및 브랜드화가 주요 목적이다.

### 2.1. 법령 체계

유기식품의 인증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법령은 행정법규인 ‘유기산품인증관리 방법(有機產品認證管理辦法)’과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有機產品認證實施規則)’이다.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2004년 11월 처음으로 공포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13년 11월 개정되어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은 2005년 6월 1일 처음으로 공포·시행되었으나, 2011년 12월 개정되어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들어 유기산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한 것은 그동안 유기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미약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신(新)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제5조에서 “국가가 통일적인 유기산품 인증제도를 추진하여 유기산품 인증목록, 표준, 인증실시규칙, 인증표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국가가 유기산품 인증 기본규범·규칙, 합격여부 평가 절차, 표준, 표지 등을 통일적으로 제정한다”고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舊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에 비해 유기식품의 관리감독에 관한 국가의 주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新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은 소비자들이 유기식품 인증표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기식품 인증표지 한 장당 하나

의 고유번호(有機碼)를 부여하고 판매하는 최소단위 포장에 인증표지, 고유번호, 인증기관명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또는 인쇄)하도록 하였다.

新 ‘유기식품인증관리방법’ 제33조는 유기식품 인증표지 한 장당 하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발급된 모든 인증표지에 대해 인증서번호, 인증획득 상품 및 생산·가공기업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소비자들은 유기식품 구매 시 해당 식품의 포장에 부착(또는 인쇄)된 유기식품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라벨을 긁어 숨겨진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NCA)가 운영하는 중국식품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中國食品農產品認證信息系統) 홈페이지(<http://food.cnca.cn>)에서 진위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인증표지 고유번호는 모두 17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앞 3자리 숫자는 인증기관 고유번호, 다음 2자리 숫자는 인증을 획득한 연도 그리고 나머지 12자리 숫자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표지 수량과 관련된 숫자이다. 이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인증서번호, 인증유형, 인증상품명칭, 상품명칭, 상품포장규격, 인증표지사용방법(부착 또는 인쇄), 인증서유효기간, 인증기관명, 인증획득생산기업명 등 9가지 사항이다.

그림 2 중국의 유기식품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라벨



중국식품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유기식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가짜로 판명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신고전화(12365, 12315)를 안내하고 있다.

新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舊 버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기산품수입 관련 조항이 추가되고 벌칙 조항도 강화되었다. 총칙(1장), 인증실시(2장), 유기산품수입(3장), 인증서 및 인증표지(4장), 관리감독(5장), 벌칙(6장), 부칙(7장) 등 총 7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개정된 新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은 목적과 범위, 인증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인증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인증근거, 인증절차, 인증후 관리, 재인증, 인증서 및 인증표지의 관리, 정보보고, 인증비용 등 10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기산품 인증서 및 유기전환산품 인증서 기본 양식, 유기산품 판매증 기본 양식, 유기산품 인증서의 고유번호 규칙, 유기산품 인증표지 고유번호 규칙을 첨부하였다.

## 2.2. 표준 체계

중국에서 농산물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의 기술적 근거인 표준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sup>2)</sup> 중국 최초의 유기식품관련 표준은 舊 국가환경보호국이 2001년 12월 25일 공포(2002.4.1 시행)한 환경보호부문 표준 HJ/T 80-2001(유기식품기술규범)이다.

중국은 유기산품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끝에 2005년 1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국가표준 GB/T 19630-2005을 제정하였다(2005.4.1 시행). 이 표준은 2011년 12월 한차례 개정되어 2012년 3월 1일부터 GB/T 19630-2011이 시행되고 있다.

이 표준은 유기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기산품(有機產品; organic produc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유기산품 국가표준 GB/T 19630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으로 정의하였다.<sup>3)</sup> 이는 국제적으로 유기수산물, 유기임산물, 유기섬유, 유기종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산품에 대

2) 중국 [표준화법標準化法(주석령 제1호, 1988.12.29 공포, 1989.4.1 시행)은 표준을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4가지로 구분하고(제6조),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은 다시 강제성표준과 비강제성표준으로 구분한다(제7조). 강제성 국가표준과 농업업종표준은 각각 GB×××-××××, NY×××-××××, 비강제성 국가표준과 농업업종표준은 각각 GB/T×××-××××, NY/T×××-××××로 표시함.

3) 이 표준에서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에 대한 정의는 HJ/T 80-2001(유기식품기술규범)의 정의와 동일함.

---

해서도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유기목재(organic timber)를 활용한 장난감, 침대, 의자, 탁자 등과 유기면화(organic cotton)를 이용한 잠옷, 양복, 내의, 면가방과 유기향수, 화장품 등이 인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유기산품 국가표준은 IFOAM, CODEX, EEC2092/91 등 국제표준과 미국 NOP, 일본 JAS 등 국가표준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생산(GB/T 19630.1-2011), 가공(GB/T 19630.2-2011), 표지 및 판매(GB/T 19630.3-2011), 관리체계(GB/T 19630.4-2011) 등 모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 인증기관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유기산품 인증을 “유기산품 인증기관이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기산품 인증규칙에 따라 유기산품의 생산, 가공, 판매 활동에 대해서 유기산품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합격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3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NCA)는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유기산품 인증 활동의 통일적인 관리와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기관이다.

지방정부의 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과 각 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국(出入境檢驗檢疫局)은 지방의 인증관리감독기관으로서 관할 행정구역내 유기산품 인증활동에 대해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유기산품의 실질적인 인증업무는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中國合格評定國家認可委員會; CNAS)가 인가하고 CNCA가 비준한 국가급 및 민간 전문인증기관이 실시한다. 유기산품 인증을 위한 산지(생산기지) 환경검사와 생산품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도 CNCA의 비준을 받아 검사업무를 실시한다.

CNCA는 정기적으로 유기산품 인증기관, 산지 환경 검사기관, 생산품 검사기관을 발표한다. 2013년 말 현재 CNCA의 비준을 받은 유기산품 인증기관은 중국 최초의 유기식품 인증기관인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南京國環有機產品認證中心; 舊국가환경보호총국 유기식품발전중심 검사인증부, OFDC), 농업부의 유기농업운동의 발전 촉진 및 유기식품 인증 관리 전문기관인 중록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中綠華夏有機食品認證中心; COFCC),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설립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국가급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중심(中國質量認證中心; CQC)을 포함하여 23개 기관이다. 인증기관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중국의 유기산품 인증기관 목록(2013년 말 현재)

번호	인증기관명칭	인증 표지
1	중국품질인증중심(中國質量認證中心; CQC) http://www.cqc.com.cn	
2	항주만태인증유한공사(杭州萬泰認證有限公司; WIT) http://www.wit-int.com	
3	방원표지인증집단유한공사(方圓標志認證集團有限公司) http://www.cqm.com.cn	
4	광둥중감인증유한책임공사(廣東中鑒認證有限責任公司) http://www.gzcc.org.cn	
5	절강공신인증유한공사(浙江公信認證有限公司) http://zjgongxin.cn.china.cn	
6	중식항신북경품질인증중심유한공사(中食恆信(北京)質量認證中心有限公司) http://www.zshx.org.cn	
7	북경중안질환경인증중심(北京中安質環境認證中心) http://www.zazh.com	
8	흑룡강성농산품품질인증중심(黑龍江省農產品質量認證中心)	-
9	중환연합북경인증중심유한공사(中環聯合(北京)認證中心有限公司) http://www.sepacec.com	
10	북경오주항통인증유한공사(北京五洲恆通認證有限公司) http://www.bjchtc.com	
11	북경중녹화유기식품인증중심(北京中綠華夏有機食品認證中心) http://www.ofcc.org.cn	
12	요녕방원유기식품인증유한공사(遼寧方園有機食品認證有限公司) http://www.fofcc.org.cn	
13	요녕요환유기식품인증중심(遼寧遼環有機食品認證中心) http://www.lnhcc.com	
14	북경오악화하관리기술중심(北京五嶽華夏管理技術中心) http://www.bjchc.com.cn	
15	신강생산건설병단환경보호과학연구소(新疆生產建設兵團環境保護科學研究所)	



표 2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기관 목록(2013년 말 현재) (계속)

번호	인증기관명칭	인증 표지
16	서북농림과기대학인증중심(西北農林科技大學認證中心) http://ylofcc.nwsuaf.edu.cn	
17	남경국환유기식품인증중심(南京國環有機產品認證中心) http://www.ofdc.org.cn (수출유기식품 인증 업무도 수행)	
18	북경동방가화인증유한책임공사(北京東方嘉禾認證有限責任公司) http://www.jiahe.org.cn	
19	항주중농품질인증중심(杭州中農質量認證中心) http://www.organicteachina.com	
20	북경애과사이인증중심유한공사(北京愛科賽爾認證中心有限公司) http://www.ecocert.cn (수출유기식품 인증 업무도 수행)	
21	남경영목인증유한공사(南京英目認證有限公司) http://www.imochina.org (수출유기식품 인증 업무만 수행)	
22	북경중합금속인증중심유한공사(北京中合金諾認證中心有限公司) http://www.co-ic.com	
23	상해색서시인증유한공사(上海色瑞斯認證有限公司) http://www.ceres-osc.com (수출유기식품 인증 업무만 수행)	

자료: (<http://www.cnca.gov.cn>)

## 2.4.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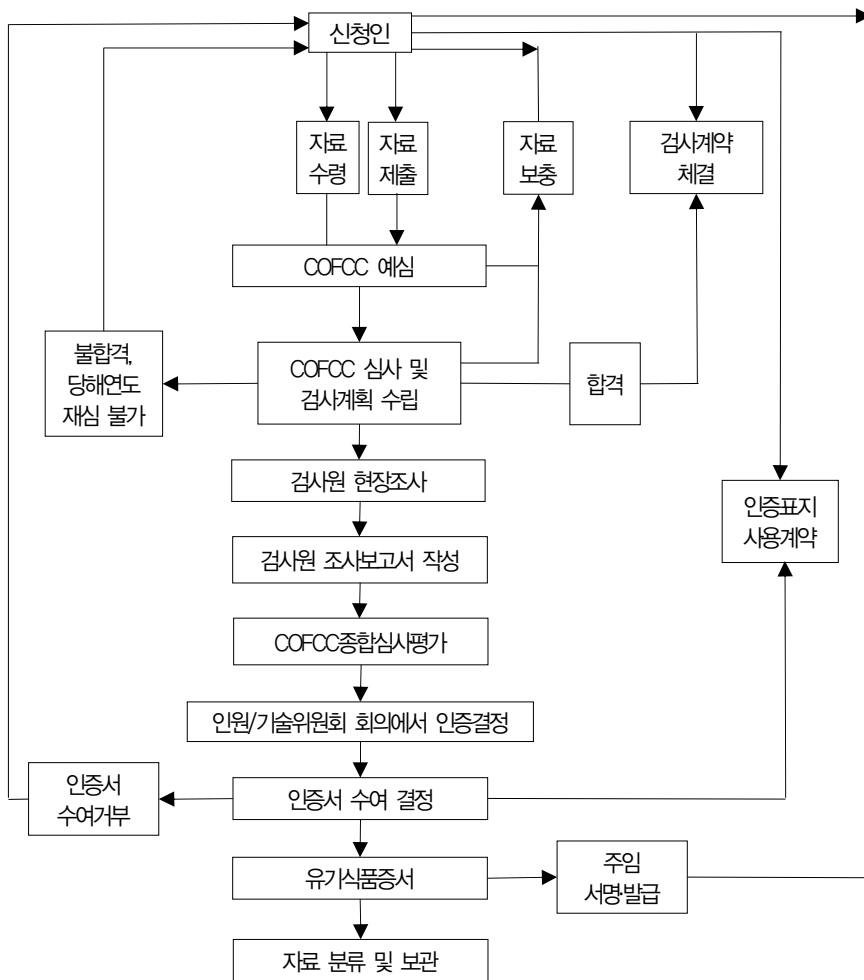
유기식품의 인증은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범주에 속하는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과는 달리 생산품 인증의 범주에 속한다. 유기식품의 인증은 CNAS가 인가한 다수의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따라서 각 인증기관별로 인증 절차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인가조례(認證認可條例)’, ‘유기식품인증관리방법’, ‘유기식품인증실시규칙’, ‘생산품 인증기관 통용요구: 유기식품 인증 응용지침(產品認證機構通用要求:有機產品認證的應用指南)’의 규정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의거하여 “과정 검사 + 필요한 생산품과 산지의 환경 검사 및 모니터링 + 인증 후 감독”이라는 통상적인 유기식품 인증 모델을 따른다.

유기식품 인증의 주요 절차는 ① 인증 신청 → ② 접수 및 자료심사 → ③ 검사 → ④

생산품 표본 채집 및 분석→⑤ 현장조사→⑥ 종합심사 및 인증 결정→⑦ 증명서 발급→⑧ 인증 후 관리로 이루어진다.

‘유기식품인증관리방법’, ‘유기식품인증실시규칙’에서는 인증 업무의 단계별 처리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공포한 인증절차에도 업무처리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유기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기식품 인증에는 약 50~60일이 소요된다.<sup>4)</sup>

그림 3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 절차(COFCC 예)



자료: 中線華夏有機食品認證中心(<http://www.ofcc.org.cn>).

4) 歐陽喜輝 主編. 2009. 「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p.23.

## 2.5. 인증 비용

유기식품의 인증 비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수수료 표준에 근거하여 책정한다. 수수료 항목은 신청비, 초심비(初審費), 검사비, 등록비, 감독검사비 등이 있다. 이 중 신청비는 500위안, 초심비는 1,500위안, 20ha 기준 검사비는 6,000위안, 등록비는 1,800위안, 감독검사비는 600위안, 생산품 검사비는 1,800위안이다. 유기식품은 산지환경에 대해 기업이 환경배경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지환경 검사비는 없다. 인증 획득 후 제2차 연도부터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비와 초심비는 면제되며, 검사비도 처음 신청 시보다 적어 일반적으로 4,500위안이다. 생산품 추출검사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한다.

표 3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비용 비교

단위 만 위안

인증 유형	인증 비목	인증 기간						연평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무공해 농산물	산지환경 검사	0.4						
	생산품 검사	0.1			0.1			
	표지 부착	1.44	1.44	1.44	1.44	1.44	1.44	
	합 계	2.0	1.44	1.44	1.54	1.44	1.44	1.54
녹색식품	인증비	0.8			0.8			
	산지환경 검사	0.4						
	생산품 검사	0.16						
	표지사용	0.1	0.1	0.1	0.1	0.1	0.1	
	합 계	1.46	0.1	0.1	0.9	0.1	0.1	0.46
유기식품	신청비	0.05						
	초심비	0.15						
	검사비	0.6	0.45	0.45	0.45	0.45	0.45	
	등록비	0.18	0.18	0.18	0.18	0.18	0.18	
	감독검사비	0.06	0.05	0.05	0.05	0.05	0.05	
	생산품 검사비	0.18						
	합 계	1.22	0.68	0.68	0.68	0.68	0.68	0.77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 「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產品質量安全網 (<http://www.aqsc.gov.cn>).

<표 3>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 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공해농산물의 인증 비용이 가장 높는데 이는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이 인증을 받은 무공해농산물은 반드시 생산품에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유기식품 인증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인

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자문기관에 자문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간 1만 위안의 자문비용이 소요된다. 만약 이 자문비용을 인증비용에 포함하면 유기식품 인증 비용이 가장 높다.

녹색식품의 인증비용이 가장 낮은 것은 녹색식품의 “정부 추동(推動), 시장 운용”이라는 인증제도 운용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엄격한 수수료 표준을 제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농업부 산하 기관으로서 인증비용 징수는 인증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영리목적이 아니다.

## 2.6. 인증 표시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표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중국 국가표준 GB/T 19630.1-2011과 GB/T 19630.2-2011에 근거하여 생산·가공된 유기산품 인증표지이다. 중국의 유기산품 인증표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국가표준 GB/T 19630.3-2011(유기산품 제3부분: 라벨링과 마케팅)은 인증표지를 중국유기산품과 중국유기전환산품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 참조>. 유기전환산품은 국가표준 GB/T 19630-2011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이전 기간인 전환기(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을 의미한다.

그림 3 중국의 유기산품 및 유기전환산품 인증표지



중국유기산품



중국유기전환산품

두 번째는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국가표준 GB/T 19630-2011 또는 자체의 유기표준에<sup>5)</sup> 근거하여 발급하는 인증표지이다. <그림 4>는 중국의 대표적인 유기산품 인증기

5) 예를 들면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南京國環有機產品認證中心; OFDC)이 2009년 4월 제정한 'OFDC유기인증표준有機認證

관인 북경중녹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COFCC),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OFDC), 항주 중농품질인증중심(OTRDC)의 인증표지이다.

그림 4 중국 주요 인증기관의 유기산품 인증표지 및 인증서 예



COFCC



OFDC



OTRDC



표준(2009.7.1 실시)이 있음. OFDC는 2003년 2월 14일 IFOAM의 인가를 획득했고, OFDC유기인증표준은 IFOAM의 기본 표준과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음.

### 3. 비교 및 시사점

중국의 유기식품은 개념적으로나 인증제도 상으로도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에 근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기타 국가들의 유기식품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기준의 친환경농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증관련 법령체계도 주요 친환경농업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단일 법령체계하에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은 우리나라와 주요 친환경농업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증기관 인정(認定), 인증기관의 심사 및 인증,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의 역할이 엄격히 구별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증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은 친환경농업 선진국과 우리나라 모두 단일 기관인데 반해 중국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증 주무기관이 서로 다른 다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만 농업관련 주무부처인 농업부에 속한 농산물품질안전중심(AQSC)과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OGFDC)이 주무기관이다. 유기식품은 농업부와 무관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주무기관이다. 이는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이 보다 폭넓은 유기산품(有機產品) 인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가 되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농민을 조직화하여 생산, 가공, 유통을 일체화하는 ‘기업+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 녹색식품 또는 유기식품 인증은 주로 농가가 결합된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생산, 가공, 유통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유기식품산업을 비롯해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견인에 의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중국에서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산업은 향후 내수시장 유망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유망 분야로도 인식되고 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기업주도의 인증과 생산, 유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중국 친환경농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친환경농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친환경농업(고품질농업)

---

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우리나라 농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산업은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의 계열화된 생산·경영시스템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농 또는 소규모 생산자조직에 기초한 소규모 생산·경영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생산·경영구조와 차이가 있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개별농가 단위로 영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중국은 유기식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식품안전 관련 최상위 법률인 「식품안전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산 농식품의 품질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국내외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도 쇠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산 농식품은 중국산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유기식품산업이 제도정비를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성도 크게 개선되는 경우 양국 간 농식품의 품질경쟁력 격차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전형진 외. 2010.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전형진 편저. 2012.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 해외농업시  
리즈9: 중국농업④.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歐陽喜輝 主編. 2009. 「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無公害農產品管理辦法》  
《有機產品認證實施規則(CNCA-N-009: 2011)》  
《有機產品認證管理辦法》  
GB/T19630-2011(有機產品)  
NY/T 391-2000(綠色食品產地環境技術條件)

## 참고사이트

- 中國農產品質量安全網 ([www.aqsc.gov.cn](http://www.aqsc.gov.cn))  
中國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www.cnca.gov.cn](http://www.cnca.gov.cn))  
中國農業部 中國農業信息網 ([www.agri.gov.cn](http://www.agri.gov.cn))